

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

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교육비를 신청합니다.

- ★ 준비사항 : 공인인증서, 가구원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, 전월세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
- ※ 가구원은 학생의 부모, 형제자매를 말함 (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음)

| 교육비 원클릭 신청 | | 복지로 온라인 신청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공인인증 및 개인 정보활용 동의 | 개인정보활용과 고유 식별 정보수집에 동의 한 후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| 메인화면 | 상단 오른쪽 '온라인 신청하기' 메뉴를 클릭 |
| | | 공인인증 및 개인 정보활용 동의 | 개인정보활용과 고유 식별 정보수집에 동의 한 후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|
| 서비스 선택 | •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(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)를 선택 (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접속한 경우 생략) | | |
|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| • 신청 대상 정보,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, 제출서류를 확인 | | |
|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| • 가구원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등을 등록함 • 자녀사항을 등록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나타남 (자녀등록시 학교선택은 필수) | | |
| 가족정보제공 동의 | •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(금융/신용/보 험정보) 제공에 동의 • 신청인은 본인과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동의 • 만 19 세 이상 가족은 본 화면에서 가족정보제공을 동의할 경우만 계속 신청이 가능 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) | | |
| 소득 / 재산 신고 | • 가구원의 소득, 재산, 부채사항을 작성 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) • 소득 재산 신고 증빙자료 (전월 세 계약서 스캔파일 등) 업로드 | | |
|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| •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) 신청서를 작성 | | |
| 신청하기 | •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(이후부터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) | | |
| 신청완료 | •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 (제출완료 후 안내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 | | |

2015년 교육비 신청 Q&A

교육비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Question 작년에도 교육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?
Answer •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'15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,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, 학교,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'15년 교육비 신청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 ※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더라도, 확인 결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조회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Question 형제 중, 큰 아이는 작년에도 교육비를 지원받았고,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.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?
Answer •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,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Question 작년에도 무상급식을 지원받았습니다. 올해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?
Answer • 무상급식 등 전체 학생에게 지원 되는 사업은 교육비 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. 따라서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이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Question 2015년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.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?
Answer •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.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.

Question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nswer • 온라인,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, 우편, 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 • 신청기간(3.2 ~ 3.13) 동안 학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※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Question 신청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?
Answer •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 • 전·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,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,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Question 교우리 가구의 소득재 산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?
Answer • 해당 시·군·구에서 국세청,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·형제·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
 • 소득인정액 계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,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모의 계산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
 ※ 단, 모의 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Question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?
Answer •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4월초부터 중순까지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, 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.
 •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※ 다른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지원 상담센터(1544-9654)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&A게시 판으로 문의바랍니다.

2015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한 경우

- 2014년부터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자동 신청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.
- 학부모님께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시면 2015년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기준

| 구분 |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|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|
|----|---|--|
| 대상 | • 교육비를 신청하여 '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•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(담임) 추천으로 '14년 1~2학기를 지원 받은 학생 | • '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•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•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(담임) 추천으로 '14년 2학기부터 지원 받은 학생 |

- 신청 대상 여부 조회 방법
 - ①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접속
 - ② 메인화면에서 교육비신청대상여부조회 배너 클릭
 - ③ 해당 학생 소속 지역 선택
 - ④ 학부모의 정보 입력 및 실명인증 확인 등
 - ⑤ 해당 학생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입력
 - ⑥ 결과 조회
 ※ 신청여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함

우리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

2015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세요!!!

교육비 원클릭신청 oneclick.moe.go.kr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.bokjiro.go.kr

- 신청대상** '15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(2015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한 경우' 참조)
- 신청기간** 2015년 3월 2(일) ~ 3월 13(일) 금
※ 신청기간 이후 접수불가
- 신청자격**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대상자, 기타 저소득층
- 신청내용** 고교 학비,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)
- 신청방법** 학부모가 아래 ①,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
① 온라인신청 : 교육비 원클릭신청(oneclick.moe.go.kr)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으로 접속 ※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
② 방문신청 : 학생(또는 학부모)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 센터
- 제출서류**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·재산 증빙서류
- 선정방법** 신청자 가구원(학생의 부모형제·자매)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"소득인정액"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
- 문의처** 학교, 교육청, 중앙상담센터(1544-9654),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&A

교육비 지원기준 안내

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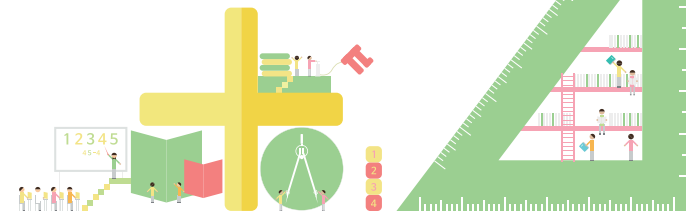
☉ 지원항목

■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

| 학교급 | 학년 | 고교 학비 | | | 급식비 |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| 교육정보화지원 | |
|-----|----|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| | 입학금 | 수업료 | 학교운영 지원비 | | | PC | 인터넷 |
| 초 | 1 | 무상교육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2 | | | | | | | |
| | 3 | | | | | | | |
| | 4 | | | | | | | |
| | 5 | | | | | | | |
| | 6 | | | | | | | |
| 중 | 1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2 | | | | | | | |
| | 3 | | | | | | | |
| 고 | 1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2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3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
■ 교육비 지원 내용

- 고교 학비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- 급식비: 초·중·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
※ 단,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: 연 60만원 이내 지원
- 교육정보화지원: 가구별 컴퓨터 1대, 가구별 인터넷통신비월 19,250원 이내 지원



☉ 지원대상

| 순위 | 자격 구분 | 보유 자격 | 고교 학비 | 급식비 |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| 교육정보화지원 |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 | | | PC | 인터넷 |
| 1 |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2 | |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3 | | 법정 차상위 대상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4 | 소득인정액 기준 | 150%이하 | 총600%이하 중고350%이하 | 130%이하 | | | |
| 5 | 학교장 추천 | ○ | | ○ | | | |
| 6 | 난민 인정자 | ○ | | ○ | | | |

※ 저소득층 수급 자격보유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
※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, 시도교육청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.

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

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
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
- 차상위 대상자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차상위 자활 대상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자 |
| 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|
| 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|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(아동)수당을 받는 자 |
| 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|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|
| ⑤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|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|

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| 가구원수 | 가구원수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| 최저 생계비 환산기준 (만원) | 100% 이하 | 106 | 136 | 167 | 198 | 229 |
| | 120% 이하 | 127 | 164 | 201 | 238 | 275 |
| | 130% 이하 | 137 | 177 | 217 | 258 | 298 |
| | 135% 이하 | 142 | 184 | 226 | 267 | 309 |
| | 140% 이하 | 148 | 191 | 234 | 277 | 320 |
| | 155% 이하 | 163 | 211 | 259 | 307 | 355 |
| | 200% 이하 | 211 | 272 | 334 | 396 | 458 |
| | 260% 이하 | 274 | 354 | 434 | 515 | 595 |

③ 학교장 추천: 1~4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,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, 학교에서 별도 선정

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안내

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
1+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
$$\text{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평가액}^{\textcircled{1}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\textcircled{2}}$$

- ①: 가구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
②: (각종 재산^③ - 기본 공제액^④ - 부채^⑤) × 월 소득환산율^⑥
※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, 0으로 처리

③ 각종 재산의 유형

| 일반재산 | 금융재산 | 승용차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토지, 건축물(주택), 전·월세보증금, 2,500cc 미만 승용차 등 | 예금, 적금, 주식, 보험 등 | 2,500cc 이상의 승용차 |

④ 기본 공제액 (기본 재산액)

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(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)

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5,400만원 | 3,400만원 | 2,900만원 |

※ [대도시] 특별시·광역시, [중소도시] 도의 "시", 세종시, [농어촌] 도의 "군"

⑤ 부채

부채는 일반재산,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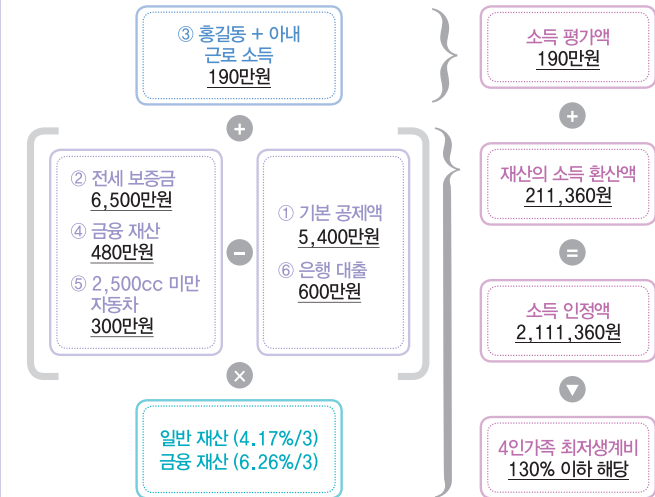
⑥ 각월 소득환산율

재산종류별로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

| 일반재산 | 금융재산 | 승용차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4.17%/3 | 6.26%/3 | 100%/3 |

소득인정액 계산 예시

홍길동 가족은 4인 가구로 ①대도시에 ②전세로 거주하며(보증금 6,500만원), 홍길동은 S회사에 근무하고 ③월급 110만원) 아래는 T회사에서 근무하고 ④월급 80만원)이다. ④저축 280만원과 보험 200만원, ⑤1,500cc 중고차(차량가액 300만원)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은행에 ⑥6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이다.



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산식

$$\{(6,500\text{만원}^{\textcircled{2}} + 300\text{만원}^{\textcircled{5}} - 5,400\text{만원}^{\textcircled{1}} - 600\text{만원}^{\textcircled{6}}) \times 4.17\%/3\} + (480\text{만원}^{\textcircled{4}} \times 6.26\%/3) = 211,360\text{원}$$

※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계산 과정을 대략 축약하였습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